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56호 2016. 9. 13.(화)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 거창군 조례 제2016-917호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2
- 거창군 조례 제2016-923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4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6-87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25

회 말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 이름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나타난 법안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개정하고, 가산금 20% 부과(안 제3조)
나. 제5조 제3항을 삭제
다. 점용료 등의 반환 기준 명확화(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
라. 기타 관련용어 순화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9. 14. ~ 2016. 10. 4.(21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03 거창군수(건설과장)
우편번호: 50132
- 전 화 : 055-940-3641 / FAX : 055-940-3529
-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건설과 하천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제5항이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하고, “부과 징수에”를 “그 밖의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점용료 등은”을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점용료를” “점용료 등을”로 하고, “1월을 1/12으로”를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월”을 “1개월”로 하고, “점용 기간이 1월”을 “점용기간이 1개월”로 하고, “매1일을 1/365로”를 “매 1일을 1/36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점용료 등의”을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 “소하천 공유수면을”를 “소하천을”로 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10%”를 “10퍼센트”로 하고,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를 “골재채취에”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2항 중 “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을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중 “점용등 허가시”를 “점용허가 시”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을 “(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토석, 사력을”를 “토석·모래·자갈 등을”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을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로 하고, “점용료를”을 “점용료 등을”로 하고, 제3항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한다”와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지방세 과오납금 예에 따른다”를 신설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제22조제3항의”를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의하되”를 “따르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 “읍면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이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22조에 따라 ----- -----, 그 밖의 변상금 및 허가 수수료 부과징수에----- -----.</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p> <p>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p> <p>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다.</p> <p>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로 한다.</p> <p>④ (생략)</p> <p>⑤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담금,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p> <p>-----.</p> <p>② <삭 제></p> <p>③ 점용료 등을----- ----- -----1개월을 1/12년으로----- --1개월----- -----점용기간1개월 ----- 매 1일을 1/365년으로--.</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따라-----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 -----제2조에 따라 ----- -----10퍼센트----- -----별표3의----- -----따라----- -----, 골재채취에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략) ② 토석, 사력 등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 -----제1항에도----- -----따라----- ----- <삭 제>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등 허가시 또는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징수)	① -----점용허가시----- -----그 밖의----- -----따라----- ② ----- ----- -----따른다.	

현행	개정안
<p><u>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u>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u>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u>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u>토석, 사력</u>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u>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u>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u>점용료</u>를 반환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p>	<p><u>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u> ① ----- ----- <u>제18조에 따라</u>----- ----- ---<u>토석· 모래· 자갈 등을</u>----- ----- <u>따라</u>-----. ② <u>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u>----- -----<u>점용료</u> <u>등을</u>-----. ③ <u>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u>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u>제2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u> ④ <u>제1항 및 제2항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u>은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p>
<p><u>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u> 「소하천정비법」 <u>제22조제3항의</u> 허가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 4에 <u>의하되</u>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p>	<p><u>제8조(허가 수수료의 징수)</u> ----- --<u>제22조제3항에 따른</u>----- -----<u>따르되</u>----- -----.</p>
<p><u>제9조(위임)</u>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u>읍면장에게</u> 위임할 수 있다.</p>	<p><u>제9조(위임)</u> ----- -----<u>읍· 면장에게</u>----- -----.</p>
<p><u>제10조(시행규칙)</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10조(시행규칙)</u> ----- -----.</p>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 등 부지)의 점용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p> <p>나. 식물이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95. 1. 5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 기까지 조립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 내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p> <p>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p> <p>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p> <p>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p>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 연액 m^3/sec당 200,000원</p> <p>나. 공업용수 (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p> <p>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 $0.05m^3-0.5m^3/sec$ 까지 연액 10,000원 ○ $0.5m^3/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구 분	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	○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 3분의 1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 제4항 나목의 4분의 1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 월 10,000m ³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사력의 채취	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소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공유수면에 한함.)	○ 인근 토지의 임대료 추정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원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으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11.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 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 등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그 밖의 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11.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 부 할 점 용 료
10%이상 20%미만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10/100+(증가율-10/100)×3/10}]
20%이상 50%미만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13/100+(증가율-20/100)×1/10}]
50%이상 100%미만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16/100+(증가율-50/100)×6/100}]
100%이상 200%미만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19/100+(증가율-100/100)×3/100}]
200%이상 500%미만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22/100+(증가율-200/100)×1/100}]
500%이상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점용료× {25/100+(증가율-500/100)×5/100}]

[별표 4]

허가수수료의 기준 (제8조 관련)

사 항 별	수 수 료 액
1.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허가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2.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점용료의 1000분의 1
3.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점용료의 1000분의 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받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허가	없음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정안 내용	의 건	비고

거창군 공고 제2016- 923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 월 13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2. 제정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안 제4조)

-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라. 소상공인 지원 범위 (안 제5조)

-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
-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마. 지원대상자 심사 (안 제6조)

바. 소상공인 경영안정 사업 추진(안 제7조)

-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 상권·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사. 자금의 지원,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사무위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1조)

-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4. 입법예고기간 : 2016. 09. 14. ~ 2016. 10. 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경제교통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goose7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교통과 상공담당 ☎(055)940-337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새마을 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 관련법률에 근거한 은행 및 조합 등을 말한다.
3. "착한가게"란 군수가 개인서비스 가격 안정을 위하여 최저가 업소 등 가격 자율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 예산범위 안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대출절차·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군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거창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5조(지원범위)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② 경영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

③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기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신용 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의2(특례지원) 군수는 제2조 제3호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2. 쓰레기봉투, 시설개보수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심사) ① 지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심사 순위는 소득이 낮은 소상공인(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납부 금액), 사업체 최초 등록일자, 거창군 거주 년수 순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7조(경영안정)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상권·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그 밖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지원) 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업무협약에 대한보고 등)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창업,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이차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자금 이차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조례 시행 규칙 제 호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차보전 지원 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차보전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그 밖의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 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체결)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거창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용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용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사업장은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세 부 사 업 별 소 요 자 금		
소 요 자 금 조 달 방 법	자 기 자 본	
	군 용 자	
	금 용 기 관	
	기 타	
용 자 금 상 환 계 획		
기 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거창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내역

(단위 : %, 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생년 월일 (남, 여)	소재지	대출액 (대출 잔액)	대출 일자	대출 금리	이자 상환일	이자 상환액	이차 보전율	이차 보전금액 (연체제외)	비고 (전화번호 등)
계												

거창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인)

거창군수 귀하

[별표]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제4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46102 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9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실시 모범업소는 제외
5621	주점업(단,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 타	도박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대부업,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 위 : 천 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신청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16-1번지	109,448	3,265	3,255	과수원 조성	2015. 9. 23. ~ 2016. 9. 22.	경남 거창군 웅양면 석정길 **	이정환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6년 9월 13일

거창군수